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본 분양 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양 광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1-852-3370) 등을 통해 분양 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분양 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과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방역 운영방안을 준수하여야만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하오니 내방 시 아래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열 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확인 시 37.5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불시에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44289(2021.09.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본 건물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허가번호/2021-건축과-신축허가-제2호(2021.02.01.)]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2021년 07월 0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21년 07월 05일 개정 및 시행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제59조의 규정만을 적용받으므로, 입주자저축요건, 주택청약자격,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공급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 예정이며, 당첨자 대상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개별 안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288-44번지 외 15필지
■ **대지면적** : 2,049.0000㎡
■ **연 면 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23,016.7407㎡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6,892.1370㎡
■ **공급대지 용도지역/지구 현황**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최고높이(60M이하), 상대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 지상 25층 2개동 중 도시형생활주택 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구분	타입	호실별 계약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 지분	공급 호실수
		호실별 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도시형 생활주택	33	33.6557	13.8790	47.5347	6.2785	53.8132	4.7330	2
	48A	48.9034	18.9216	67.8250	9.1230	76.9480	6.8773	72
	48B	48.8380	19.8158	68.6538	9.1108	77.7646	6.8681	16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세대, ㎡)

타입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1-11-22	2022-04-15	2022-09-15	2023-02-15	2023-07-17	2023-12-15	2024-03-15	입주시
33	2	24층	1	98,051,300	141,448,700	239,500,000	10,000,000	1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71,850,000
		25층	1	98,051,300	141,448,700	239,500,000	10,000,000	1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23,950,000	71,850,000
48A	72	2층	3	125,522,040	181,077,960	306,600,000	10,000,000	20,660,000	30,660,000	30,660,000	30,660,000	30,660,000	30,660,000	30,660,000	91,980,000
		3층	3	126,832,120	182,967,880	309,800,000	10,000,000	2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30,980,000	92,940,000
		4층	3	128,183,140	184,916,860	313,100,000	10,000,000	2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93,930,000
		5층~9층	15	130,844,240	188,755,760	319,600,000	10,000,000	2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95,880,000
		10층~16층	21	132,440,900	191,059,100	323,500,000	10,000,000	2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97,050,000
		17층~20층	12	136,125,500	196,374,500	332,500,000	10,000,000	2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33,250,000	99,750,000
		21층 이상	15	138,540,960	199,859,040	338,400,000	10,000,000	2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33,840,000	101,520,000
48B	16	10층~16층	7	134,037,560	193,362,440	327,400,000	10,000,000	2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32,740,000	98,220,000
		17층~20층	4	137,804,040	198,795,960	336,600,000	10,000,000	2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33,660,000	100,980,000
		21층 이상	5	140,219,500	202,280,500	342,500,000	10,000,000	2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34,250,000	102,750,000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타입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타입별로 접수 받아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 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체 대지지분을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본 공동주택의 모든 타입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일괄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공급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 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16.) 현재 만19세 이상(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및 법인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 및 층, 호수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청약은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타입에 중복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 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호수 및 타입은 아래와 같이 청약 일정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청약 신청은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은행 창구 직접 접수시는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 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1년 10월 15일 (금) (08 : 00 ~ 17 : 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	2021년 10월 20일 (수) 16시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스마트폰 앱)
계약일	2021년 10월 21일 (목) ~ 23일 (토) (10 : 00 ~ 16 : 00)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 에서 '청약Home'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 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부산은행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이용 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 : 30으로 청약신청 진행중 17 : 30이 경과 시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전타입	1,000,000원 (금 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시 구비서류 (부산은행 전 지점)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및 법인 등을 제외하고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공급신청서(견본주택 또는 은행창구 비치) - 본인 도장(본인의 경우 서명 가능)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td></tr>
</table>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서(은행창구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은행 창구 청약 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 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이 동일 타입 내 중복 당첨 시 모두 무효 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이 동일 타입 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공고일(2021.09.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3년)]까지 분양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1조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 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 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 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구분	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 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됩니다. • 자동 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합니다.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 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일정	장소
계약기간	2021년 10월 21일 (목) ~ 23일 (토) (10 : 00 ~ 16 : 00)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견본주택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 분양대금 납부방법 : 아래의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만 가능(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며 아래의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참고사항
분양대금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76-1716-08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1)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예2) 101동 1403호 아무개 → 1011403아무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계약자 성명 및 호수를 기재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904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0904홍길동)
※ 당첨된 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책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에 준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본인 계약시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법인 계약시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사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포함) 추가 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추가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계약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제반 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이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 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해약 후 환불금이 있을 경우, 별도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전자 수입인지를 본 계약시 지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현황, 도로, 소음, 일조권,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또는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부터 제6항에 준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안내(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기관 : 추후 확정(계약자 개별 통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위탁사 ㈜디에스산업개발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중도금 무이자가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 및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대출 제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출은행은 위탁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하고, 계약자는 위탁사가 통보한 기한 전까지 계약자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대출한도미달, 금융거래불량, 대출서류(소득증빙자료 등) 미제출 등〕로 인해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자는 본인 부담으로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이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연체료는 공급계약서 상에 명시된 연체요율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으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탁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 일자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세대 계약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 타입 또는 2개 이상 타입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및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입주자 사전점검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방문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2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 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 (향후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
- 실 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장 차로 : 2.3m 이상
- 주차장 층고 : 3.6m ~ 3.8m

Ⅳ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33	5,000,000	500,000	4,500,000	
48A, 48B	8,000,000	800,000	7,200,000	

※ 타입별 확장 선택형 유형에 따라 평면이 상이하며, 확장 분양가 등 해당 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안내**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부산은행	101-2076-7354-06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상기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발코니 확장 공사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수단 되는 추가설치품목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절, 품귀 자재 및 제품 수급 불가능, 신제품 개시, 법규 및 관련 기준 변경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및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기본 선택품목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할 경우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해 하자 처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추가 신청 및 변경 불가능)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및 두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내 마감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및 색상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시행사(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제시된 선택형 외에 개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해 천장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커튼박스 깊이 축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품목(추가 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공사금액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20%)	입주지정일(80%)	
33	2	실1 + 실2	3,500,000	700,000	2,800,000	
48A, 48B	2	실1 + 실2	3,600,000	720,000	2,880,000	
	3	실1(2대) + 실2	5,000,000	1,000,000	4,0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하며 계약 후 선택사항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확정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냉매매립 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외부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오니 계약 체결 시 실제 설치 위치 및 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단열재 적용 범위,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 및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텐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됩니다. (에어컨 장비는 제외)

◎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설치 위치	금 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20%)	입주지정일(80%)	
48A, 48B	주방 벽체	1,100,000	220,000	880,000	

※ 엔지니어드스톤 미선택시 타일로 시공됩니다.

◎ 주방 가전

(단위:원, 부가가치세포함)

타입	구분	금 액	계약금	잔금	비 고
			계약시(20%)	입주지정일(80%)	
48A, 48B	TBI 냉장고	6,200,000	1,240,000	4,960,000	
	콤비냉장고 + 펜트리 이너서랍	2,000,000	400,000	1,600,000	
	콤비냉장고 + 빌트인전자레인지 + 소물장	2,000,000	400,000	1,600,000	

■ 유상옵션품목 납부 계좌 안내

- 추가선택품목 납부는 아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201동 505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2010505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잔금 납부 : 계약시 세대별로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품목의 계약 내용 및 계약금(20%), 잔금(80%) 납부 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납부 순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시	입주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계약금(20%)	잔금(80%)	부산은행	113-2006-1540-02	삼정건설 주식회사

V 기타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람)

구 분	내 용
공통 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사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 분양계약서 ,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 세대 평면도 , 면적 ,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합니다. • 본 건축물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부 계단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의 정원,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 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 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하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주변 현황 (인접 아파트 단지, 인접 주택 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단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 시설(도시 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릅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여건 상 당 사업지 내에 인접 건물용 전신주 및 맨홀 등이 경계부 측으로 일부 존치 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관리목적에 한해 해당시설 관리자가 단지내 출입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단지 측면에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로의 경계와 지적측량경계가 상이하여 경계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부상 지적측량경계 면적으로 합니다. • 시공 시 인접 건물과 대지경계에 침범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없이 대지의 상호 교환사용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은 준공 시 수분양자에게 승계됨을 인지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경계에 설치되는 경계울타리(담장 등)는 인접건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본 사업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감재	•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승인도서(변경승인 포함)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마감자재는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욕실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홍보물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보도자료 기준이며, 인허가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 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 기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건축허가 최종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전시세대 천장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 될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리플렛 및 카탈로그 등 분양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업지내 축적과 단지 주변 축적을 달리하여 표현하였으며, 일부 현황을 간략화 또는 축소하였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도로, 철도,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설치된 단지 내·외부의 옹벽 및 시설물 등은 일부 도면과 현황 레벨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조정하여 제작하였으며, 본 공사시 실제 현황에 맞추어 실시설계 및 최종 시공 될 예정입니다. • 커뮤니티 모형에 표현된 공간 계획, 마감재,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은 실시공 시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식탁 등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일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시설, 포장 등) ,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 시와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으로 역사 등이 위치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조망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부산교통공사, 관할관청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에 소방차 정차공간을 그림자 조명으로 표시하며 준공 후 철거할 수 없습니다. • 충렬대로측 대지 내 보행용 인도의 유지관리 주체로서 공동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 높이 ,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미술 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 시 별도의 정산은 없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경비실, 주차 게이트, 도로 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정은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 심의, 전문심의 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 차량 동선 등 포함), 조경수와 조경 시설(주민운동 시설, 휴게공간, 차음 식재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경계 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소방 내진 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 수위 등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부지 내에 지상식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측벽에 낙뢰예방(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을 위한 측뢰 피뢰침을 시공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본 건축물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33, 48A, 48B 타입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개의 실로 구성됩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창틀 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데크 엘리베이터, 데크 계단 디자인, 상부 지붕 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유리 난간대가 설치된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어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 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축사, 공장, 기타 유해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 설치로 인해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배경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 아파트 단지의 부지가 아니며, 지자체 심의 및 인허가 과정 중 도로 선형, 식재 계획,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모형, CG 등에 표현된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의 관련 민원을 당사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남측의 4M도로에서 차량 진입하여 충렬대로측으로 차량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 단지 내 비상 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비상 차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 소음, 매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차량 진출구 좌측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되거나,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 재질 ,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저층부 입면 석재마감/석재뿜칠 마감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 항공 장애등, 태양광발전설비, 위성안테나, 피뢰침, 이동 통신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탈취기 및 급배기 환기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환기구, 제연설비 환기구 등)이 주동에 접하거나 전면·측면·배면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본 공사시 효율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매연,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하부 지하층 및 지하층 주변에 휀룸 또는 제연 휀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설계도면에 반영된 공용설비로 인한 제반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비상 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등의 디자인 및 장식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공동 주택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색채 및 창호 형태는 부산광역시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 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견본주택 내 모형도, CG에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계획은 향후 인허가 진행 사항 및 인근 단지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옥상층에 발전기실 및 노출형 전기실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층에 소방용 수조가 설치됩니다. • 102동 옥상층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됩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의 수량 및 높이는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부 마감 기준은 시공사의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치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 간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 창호 형태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에 근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33, 48B)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계단실 내부의 바닥마감은 지정타일, 벽마감은 지정도장으로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 및 부대시설 외벽은 석재와 뿜칠, 벽돌, 수성페인트가 혼합 시공됩니다.
	부대 시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민 전체의 공동 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휀룸 , 실외기실 ,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외부계단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크기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 세대에서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면, 입면, 단면, 마감재 및 집기, 창호 재질 및 색상, 창호 사양, 유리 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 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 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 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 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등)의 운영·보수·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단지 내 주차장은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 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시공사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상부 시설이 단열이 필요한 부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주차대수 산정 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대비 세대 당 1대로 배정되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대비 세대당 0.5대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부족 등의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일반 택배 차량의 출입이 불가합니다. 층고 3.8m (실유효높이 2.3m)으로 계획됩니다. 단지 내 주차장 차로의 실 유효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서 2.7m 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업지 지하주차장 차로 실 유효높이는 동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제2호 가목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조경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 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 호실 지정 시 동일타입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 조정, 난간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시공예정이며, 제품의 단종시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커튼 박스 길이는 천장 배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D, AD 등 샤프트 벽 내부 별도 마감(미장 포함) 없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세탁물 건조기, 의류 보관함 등)이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사전에 확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타입의 현관 신발 수납장의 내부 구성은 세대 위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TBI 냉장고, 콤비냉장고 등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냉장고 뒤쪽 벽체는 벽지 마감됩니다. 견본주택에서 자세한 도면을 확인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하는 침실 및 욕실문 고정부 모서리 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재질, 색상 및 상태는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됩니다.(2~17층, 48A)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주방,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수납사용이 어려우며, 하부공간이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이며, 점검구의 위치, 개소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에 급수급탕 분배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기둥의 크기 차이로 인해 세대형별이 같더라도 실제 내부 벽체의 길이 및 유효 서비스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이와 관련 확인하고 이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8A)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신발장,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아트월, 현관 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시공되는 주방가구 상판 및 벽체의 스톤 재질은 원재료의 특성상 이음 부위의 마감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하자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 코일 및 강마루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됩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 현관 전면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각각 면하고 있어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 대기인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동체 감지기는 1, 2층 및 최상층에만 적용합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상부장 하부에 주방 액정 TV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부장에 주방 액정 TV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및 단자함은 노출된 벽체에 설치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통신세대단자함, 전기 분전함,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화장실 천장 내부에 급수 급탕 분배기가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주방가구, 일반 가구 규격 및 배치 불만, 전자제품 사용 불편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 평면 및 가구류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할 수 없고, 내부 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 기실/ 대피 공간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3타입 세대의 초과 발코니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해 서비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에어컨 매립배관,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 조명기구 등의 물품이 축소되거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발코니 비확장에 따른 세부사항은 건립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을 확인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의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의 금속문의 문짝, 프레임, 손잡이, 힌지 등의 형태, 색상, 위치, 문열림 방향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배관이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전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됩니다.(최하층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 시, 해당 발코니의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바닥에서 3㎝~4㎝ 돌출되어 생활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창호	• 본 공사 시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구 및 창호의 시공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 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KCC, LG하우시스, 현대L&C 제품 중 선택하여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문/창의 위치, 크기 및 형태, 제조사, 문열림 방향, 프레임, 손잡이, 힌지의 형태 등은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 발전기 연도 설치로 발전기 운전 시에 따른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상부에 설비배관이 노출 설치되어 천장 높이가 변경되거나 타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단천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 계획 등으로 인한 1층 필로티 천장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패드 및 주방TV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 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101동, 102동, 옥상층 등 지상 일부 구간, 지하주차장 일부, 통신실 등

■ 감리회사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낙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건축 감리	㈜지디에이건축사사무소, (주)지음건축사사무소	917,400,000	
	전기 / 통신 / 소방 감리	㈜일신이앤에프	154,33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

(단위: 원)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1-104-0002100호	₩ 20,490,19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 ~ 소유권 보존등기일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또한 본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인 신탁사가 매도인이 되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신탁계약체결을 요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 의무는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은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탁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사 또는 시행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디에스산업개발이 부담하며, "을"(매수인)은 우리자산신탁(주)에게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손해 및 비용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분양목적물은 우리자산신탁(주)와 ㈜디에스산업개발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이 되는 것이며, 신탁 해지 또는 신탁 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 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디에스산업개발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수분양자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받아 승낙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을"(매수인)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을 상대로 일체 하자보수(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 또는 시공사 삼정건설(주)에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 한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PF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우리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디에스산업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한다. 또한 미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디에스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한다.
- 분양목적물과 관련하여 계약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분양조건에 대하여 우리자산신탁(주)에 일체의 보장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며, 이에 따라 임대수익률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분양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감액, 본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의 요청, 손해 배상 청구 및 소송 등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 또는 매수인 "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디에스산업개발과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정"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34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프라자 20층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매도인 겸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에스산업개발	삼정건설 주식회사	제이에이치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역삼동, 삼정빌딩 13층)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71, 2층(사직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4층(온천동)	경남 김해시 호계로 412 A동 802호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80111-1117589	180111-0797499	195511-0254519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낙민역삼정그린코아더시티.com
■ 견본주택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29
■ 분양문의 : 051) 852-337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